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4
----------	-------

발의연월일 : 2026. 7. 29.

발 의 자 : 김정호 · 이연희 · 임미애
이수진 · 안태준 · 허종식
서왕진 · 김남준 · 전진숙
박 정 · 허성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기·1회용 컵의 회수·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보증금 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용기 반환 인프라가 소매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 등 빈용기 반환 인프라의 체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빈용기 재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생산, 회수, 재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수, 재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6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 운영 및 인식개선사업

제41조제2항제6호의3 중 “제15조의2제7항”을 “제15조의2제7항 본문·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비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 ⑥ (생략) <u><신 설></u>	제15조의2(비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u>⑧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생산, 회수, 재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수, 재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⑦ (생략)</u>	<u>⑨ (현행 제7항과 같음)</u>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② (생략)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 운영</u> <u>및 인식개선사업</u>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 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재 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 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 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의3. 제15조의2제7항 본문·제 8항 및 제9항----- ----- ----- ----- -----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